

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
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1. 사건의 표시

사건번호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313 증권관련집단소송

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자 : 김태웅, 이정수, 김성호 외 12명

소송대리인 :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, 김주영, 전영준, 송성현

피고 : 지에스건설 주식회사

2. 총원의 범위

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2012 회계연도(제44기)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인 2013.

4. 1.부터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잠정실적공시를 한 2013. 4. 10.까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이후 그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들

3.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

(1) 청구의 취지

피고는 총원에게 금 426,309,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(추후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)

(2) 청구의 원인

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전체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각종 해외 도급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함에 있어서, 과다경쟁에 따른 저가수주를 한 아랍에미리트(UAE) 르와이스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2012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바,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동 사업보고서를 믿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4. 대표당사자 선임신청

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신청인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).

이 공고문은 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의 법원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13. 10. 16.

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재판장 판사 이원형

*문의사항 연락처 :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참여관 박민숙

*전화 : 02-530-1745, 팩스 : 02-3477-8108